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沈志華*

박종철**

| 목 차 |

I. 문제제기	IV. 김일성, 국경문제 해결 적극 요구
II.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	
III.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 문제 처리에 관한 방침	V. ‘중조변계조약’과 관련문건의 내용
	VI. 결론

| 논문요약 |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역사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1950년대 중국 정부는 ‘간도조약’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분쟁을 부차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62년 북한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장백산 천지 귀속 문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형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측에 양보를 결정했다. 따라서 북·중 간에는 몇 개월만에 순조롭고 신속하게 국경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접근 방식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1950-60년대의 북중 관계는 정상적이고 현대적인 국가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근거로 중국외교부, 그리고 국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성(省)정부의 문건, 대만의 국사관(國史館)과 외교부의 문건, 그리고 한국학자들이 연구한 관련 문건 등을 이용하였다.

* 中國華東師範大學 歷史學科 教授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 논문을 번역하였음.

▪ 주제어: 중조변계회담(中朝邊界談判), 중조변계조약(中朝邊界條約), 중조관계(中朝關係), 장백산(長白山), 간도조약(間島條約)

I. 문제 제기

중국학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둘러싼 역사적인 논쟁에 대하여 심도 있고 상세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분야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명·청 시기 국경의 분쟁과 회담,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것이다. 중화민국 시기,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양국 간의 국경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¹⁾ 왜냐하면 사료의 부족과 문제의 민감성 때문이다.²⁾

- 1) 이 분야의 대표 논저로는 楊昭全 孫玉梅(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楊昭全主編(1998, 未刊), 『中朝邊界研究文集』 下冊, 吉林省社會科學院; 刁書仁(2001-4), “中朝邊界研革史研究,” 『中國邊境史地研究(중국변경 역사지리연구)』, pp.19-25. 또한 이와 관련된 해외의 관련 연구성과도 많지 않다. 한국학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학술가치가 있는 논문은 많지 않다. 이종석(2000)은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에서 국경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였고, 매우 중요한 문헌을 실었다(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4장을 참조). 그러나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경문제에 관한 정책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다. 그 외에 논문으로 양태진(2007), “북중변계조약을 통해 본 북방한계선-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vol. 32, pp. 79-99; 김명기(2008), “북중 국경조약과 간도-간도 영유권 회복이 최상의 민족적 소명이며 국민적 성찰이 필요,” 『북한』, pp.23-29; 서길수(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이는 1962년 중조변계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경의 방향, 말뚝 좌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조약 체결의 과정과 양국의 정책변화와 관련된 서술은 매우 적다. 구미학계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학자 테일러 프레이블(Taylor Fravel)은 중국 국경분쟁 문제를 연구한 저술에서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약 두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Taylor Fravel(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3-115.
- 2) 楊昭全, 孫玉梅 編(1994), 『中朝邊界研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은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권위있는 저서이다. 이 책의 분량은 1,300쪽에 이르지만 수집된 문헌과 문서가 청 말 시기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그 이후 시기를 연구하기 위한 사료가 없다. 이 문제에 민감성을 소개하면, 필자가 십 여 년 전 지린성문서보관소(吉林省檔案館)에서 문서를 조사할 때는 국경문제와 관련된 다량의 문서를 보았으나, 2010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이 문서들이 봉인되어 보관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0-60년대 중북관계사의 연구에서 국경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중국외교부, 그리고 국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성(省)정부의 문건, 대만의 국사관(國史館)과 외교부의 문건, 그리고 한국학자들이 연구한 관련 문건 등을 조사, 연구하였다.

II.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논쟁은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국경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연지리적 요인과 민족 감정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명나라 시기와 조선왕조 건국 초기까지 두 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이미 확정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는 모두 장백산이고, 장백산 천지는 송화강(松花江),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의 발원지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중류 이하의 강폭은 넓고 수심이 깊고 물이 많아서 양국 간의 경계가 명확했다. 이와 비교하여 두 강의 상류 특히 두만강의 발원지는 수심이 얕아 경계선이 불분명했다. 또한 국경지대 주민들이 빈번하게 월경(越境)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중국학자들은 조선왕조 초기에는 조선의 발상지는 장백산이 아닌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영흥(永興)이며, 또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장백산을 ‘나라 밖의 산(域外之山)’이라고 인식하였다고 고증하고 있다.

1712년 강희제(康熙帝)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국경지대를 조사하여, 장백산 천지이남 10여 리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때 정한 경계로 청 왕조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천지는 청 왕조 발상의 성지로써 중국의 영역에 편입되고 장백산은 청 왕조와 조선의 경계가 되었다. 조선의 영조

또한 중국외교부가 출판한 12권의 『中外邊界事務條約集(중조변계사무조약집)』의 『중조편(中朝卷)』에는 중북 양국의 거의 모든 국경업무, 관련조약 및 협정이 망라되어 있는데, 유독 1962년 중조변계조약과 관련된 문건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編(2004),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中朝卷, 世界知識出版社.

(1724-1776년)시기, 조정에서는 수차례 토론을 거쳐 장백산을 '북악(北岳)'으로 최종 확정하여 왕업을 흥하게 하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곳(興王肇基)으로서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정하였다. 100여 년간 제사를 지내면서 조선민족의 장백산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

고종 즉위(1864년) 후에는 장백산을 조선왕조의 발원지를 상징하는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정식으로 국가의 사전(祀典)에 편입시켰고, 심지어 『고종실록(高宗實錄)』에는 '우리나라의 백두산'으로까지 표기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직후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 되면서 조선왕조의 성산으로서의 장백산은 조선인들이 조상을 기리고 민족의식을 간직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 결과 양국간 국경분쟁에 있어서 장백산은 더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청 왕조는 두만강의 발원지를 발원지 남쪽의 홍단수(紅丹水)로 보았고, 조선은 북쪽의 홍토산수(紅土山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것이 바로 양국간 두만강 발원지역 국경선에 관한 이견인 것이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 왕조와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협상을 하였다.

제 2차 협상에서 청 왕조는 양보하여 홍단수(紅丹水)를 두만강의 발원지로 한다는 이전의 주장을 포기하고 중간지역인 석을수(石乙水)를 두만강의 발원지로 하여 국경선을 획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조선측 협상대표는 심정적으로 청 왕조의 제안에 수긍하였지만, 조선 정부에서 여전히 두만강의 발원지를 홍토산수(紅土山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함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후 조선은 협상대표 파견을 거절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의 '보호국'으로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외교권을 장악하여 청과 조선의 국경협상은 청과 일본의 협상으로 전환되었다.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장기간 교섭을 통해 '두만강 중.한 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즉, '간도조약(間島條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청 왕조와 조선 양국의 국경으로 삼고, 두만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에서 석을수(石乙水)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9일 조선내각총리대신이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887년 청 왕조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 왕조와 조선 사이의 200년간 지속되었

던 국경 분쟁과 협상은 마무리 되고, 장백산 천지 및 주변의 봉우리는 중국 경내로 편입되었다.³⁾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 조선인들은 일본정부가 대신하여 체결한 간도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다.⁴⁾ 당시 북한은 소련의 통제 하에 있었다. 1947년 4월, 국민당정부 동북행원(東北行轅) 주임 솽스후이(熊式輝)는 소련의 특공대가 장백산 및 북한의 북부 지역에서 측량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외교부에 두 차례 보냈다.⁵⁾ 1948년 7월 10일, 국민당정부 국방부 제2청에서 보고한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소련의 극동지역 당국은 중국의 "길림성(吉林省)의 연길(延吉), 목단강(牡丹江), 목릉(穆陵)과 그 주변지역을 북한영토로 편입"시키고, 위 지역은 "북한의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고, 해당지역의 행정 또한 조선인이 맡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48년 2월에는 소련과 북한이 평양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간도(間島), 안동(安東, 지금의 丹東), 길림(吉林) 세 지역을 조선의 자치구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국민당정부 외교부장 왕스제(王世杰)는 위 내용의 문건을 '외교부 아서사(亞西司)로 보낼 것, 특별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⁶⁾ 2개월 후, 외교부 아서사가 제출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연길 등지를 조사한 결과 원래 거주했던 조선인들이 많은 관계로 중국공산당이 조선국적 보유자를 지방의 관리로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의 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북한군 부대가 이곳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도 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

3) 관련 사료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楊昭全 孫玉梅, 전게서, pp. 537-547, 614-615; 編寫組(1996), 『中朝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pp. 551-567, 733-775; 蔡建(2004-11), "中朝邊界爭執與〈圖們江中韓界務條款〉," 『韓國研究論叢』, pp. 186-201; 李花子(2007-02), "朝鮮王朝의長白山認識," 『中國邊境史地研究』, pp. 126-150.

4) 陳朝陽, "中韓延吉界務之交涉(1882-1909)," 楊昭全 主編, 『中朝邊界研究論集』 下冊, p. 1028.

5) 熊式輝致王世杰電, "蘇特工在北滿及中朝邊地測繪(솽스후이가 왕스제에게 부친 전보, 북한 및 중북국경에서 소련특공대의 측량작업)," 1947年 4月 13,22日, 唐屹 主編(2001, 未刊), 『外交部檔案叢書界務類第一冊 東北卷(외교부당안총서 국경업무류 제1첩 동북권)』, 中華民國外交部編印, p. 301.

6) 國防部二廳致外交部(국방부 제2청이 외교부에 보냄), "最近蘇聯在我東北活動概況(최근 중국동북지역에서 소련의 활동개황)," 1948年7月10日, 상게서, pp. 295-296.

이었다. 더불어 연길과 목단강, 목릉 등의 지역은 북한과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이 다른 나라로 귀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이 소식의 사실 여부를 의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947년 8월 26일, 소련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중·소 국경지역의 표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당정부 외교부는 중국주재 소련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국민당정부는 실지조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관리 파견하는 것 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여 소련정부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은 “중국정부가 위의 성명에 근거하여 이후 소련 측과의 협상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⁷⁾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소련과 북한은 당시 1909년 ‘간도조약’에서 이미 중국의 영토로 확정된 간도, 안동, 길림 지역을 노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외교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당정부 국방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관해 후에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당정부는 이미 ‘알타협정’과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자신이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 필자가 대만의 공문서를 조사해 본 결과, 당시 중국과 조선의 국경선 분쟁 또는 국경지대 문제는 주로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최하류에 위치한 영문항(迎門港) 일대에서 월경한 중국 어부들에게 북한군이 경고 사격한 사건과 같은 압록강의 황초평도(黃草坪島) 분쟁이나 중·북 양국이 공동 건설한 수풍(水豊)발전소 전력 배분문제에 관한 분쟁 등이 있었다.⁹⁾ 필자가 대만외교부 문서 중에서 발견한

7) “亞西司關於國防部二廳情報蘇方將延吉等地劃歸朝鮮消息之分析,” 상계서, pp. 296.

8) 2006년 6월 26일, 한국 연합뉴스는 박선영 전 포항공대 교수가 발견한 문서를 인용해 『구 소련 1948년에 간도 북한귀속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국방부 제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는 “소련이 장차 길림성(吉林省)의 연길(延吉)과 목단강(牡丹江), 목릉(穆陵) 및 인근지역을 북한 영토로 편입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서 박선영 교수는 국방부가 수집한 미확인 정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박 교수는 1948년 9월 7일 외교부가 이 정보에 관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지 못했거나 혹은 고의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9) 『中韓國境糾紛(중한국경분쟁)』, (臺灣)國史館, 020-0100202-0003, pp. 35-44,

어떤 문건에는 당시 국민당정부의 중국과 북한 국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 1909년 조약을 이미 체결한 것을 고려한다면 “간도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이고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100여만 명의 조선인의 처리는 당연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다. 국경문제에 관해서 두만강 석을수의 경계선을 고치기는 어렵다. 1909년 중·일 양국이 체결한 ‘두만강 중·한 변계업무조약(圖們江中韓界務條約)’ 제1조 국경선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압록강가의 갈대밭과 섬이 매우 많아 황초평(黃草坪)과 동덕당(同德塘)위에 여러 곳의 무명 갈대밭은 대부분 일본인이 강제 점령하였다. 강물에 의해 침식되고, 강변이 무너져 강줄기가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여 강 가운데 진흙과 모래가 모여 사주(沙洲)가 형성되었다.”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는 “황초평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각종 문헌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갈대밭과 섬은 일본인이 강제 점령한 것으로 장차 한국의 영토를 결정할 때 우리는 재확정을 요구하여 실사를 거쳐 국제관례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국공양당의 동북지역 내전 시기, 연변일대는 중국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어 중국공산당 민주정부 또한 중국과 북한 간 국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연변지위(延邊地委)는 1948년 8월에 작성된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두만강을 경계로 나뉜 것은 역사적인 자연지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강의 지류가 바뀌거나 새로운 지류가 생김에 따라 양국의 연안 마을과 토지가 뒤섞이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강물의 주류(主流)를 경계로 하는 것을 확정하여 이 지역 거주민들이 본인에 의사에 따라 계속 거주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양국 국경에서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국 주민들이 현지 정부에 보고하여 해결하게 하고, 하급 정부 관리와 현지 주민들이 임의로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¹¹⁾

118-122 ; 唐屹 主編, 전계서, pp. 320.

10) 『韓國疆域研究』, (臺灣)外交部檔案館, 097.1-0004, pp. 182-190. 이 문건의 소장처가 불분명하고 지은이와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내의 어떤 부서에서 1948년에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 국경분쟁은 지엽적인 일로써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III.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문제 처리에 관한 방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정부는 국경문제 처리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1950년 초, 중국공산당 중앙(中共中央)은 국경문제의 상황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국가와의 국경문제 해결에 관하여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중국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국경문제 관련 조약과 협정 등'에 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국경에서의 미해결된 현안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유지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관련부처에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해결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¹²⁾ 1950년 4월, 북한은 동북인민정부에 압록강 운항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제작한 지도를 송부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북한이 제기한 '항로표지구역의 설치규정'은 국가영토주권과 관계된 문제로 중앙인민정부 외교부와 북한이 회담해야만 하며 지방정부와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의 지시로 동북인민정부 외사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중단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북경으로 보내어 외교부가 모든 정황을 파악한 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확

11) 延邊地委(1985, 未刊), "關於延邊民族問題(연길민족문제에 관하여)," 1948년 8월 15일;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 編, 『中共延邊吉東吉敦地委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第一集, pp. 387-388.

12) 『中共中央關於中緬邊界問題的指示(중국-미얀마 간 국경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 1956년 10월 31일, 廖心文, 『二十世紀五十年代中國處理陸地邊界問題的原則和辦法(1950년대 육지변경문제처리에 관한 중국의 원칙과 방법)』("1950年代的中國," 國際學術研討會, 2004년 8월, 上海. 재인용)

정하였다.¹³⁾ 이 회담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한 문서 기록은 없지만, 중국정부의 처리방식으로 볼 때 중앙정부가 국경문제 해결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중반, 중국은 대규모 경제건설을 하며, 미국의 봉쇄와 고립정책에 대응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중포위망을 뚫고, 또한 안정된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평화공존(和平共處)’이라는 외교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외교의 급선무는 국경분쟁 때문에 형성된 동남아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1955년 11월, 중국-미얀마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착오를 일으켜 국경의 황과원(黃果園) 일대에서 교전하였다.¹⁴⁾ 1956년 2월 중·소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신장 이리(新疆 伊犁)의 분쟁지역인 영탑이(英塔爾) 일대에서 서로 경고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⁵⁾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중국정부는 국경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56년 중공중앙은 국경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¹⁶⁾ 1957년 3월 16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과거에 채택했던 현상유지정책은 필요하였고 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대책으로 장기적 정책이 아니므로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⁷⁾ 1957년 8월에서 10월, 북한과 소련이 회담을 통해 국경협정을 체결하였다.¹⁸⁾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
- 13) “外交部致東北人民政府函(외교부가 동북인민정부에 보낸 서신),” 1950年4月24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以下 外交部檔案館), 106-00021-03, p. 4.
- 14) 劉金潔(2006-01), “中緬邊界中的”麥克馬洪線”問題及其解決(중국-미얀마 국경문제 중 “맥마흔라인”문제와 그 해결), 『當代中國史研究(당대중국사연구)』 p. 91; 馮月, 齊鵬飛(2006-06), “中緬邊界談判述略,” 『湖南科技大學學報』, pp. 55-60.
- 15) “伊犁州外事分處關於伊犁地區中蘇邊境調查報告(이리지구 중소국경조사에 관한 이리지구 외사분소의 보고),” 1960年9月24日, 新疆伊犁州檔案館, 11/1/134, pp. 3-14
- 16)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金沖及 主編(1998), 『周恩來傳』下卷, 中央文獻出版社, pp. 1292-1324.
- 17) 姚忠明 等(1989), “周恩來總理解決中緬邊界問題的輝煌業績(중국-미얀마 국경문제 해결에 있어 저우언라이 총리의 눈부신 업적),” 裴堅章 編, 『研究周恩來--外交思想與實踐(저우언라이 외교사상과 실천 연구)』, 世界智識出版社, p. 95.
- 18) “푸자노프 일기: 1957年8月16일부터 10月15일까지,” ABIPΦ(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 0102, оп. 13, д. 5, л. 193-307. 푸자노프의 일기에는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국경문제 처리에 대한 속도를 한층 가속화 하였다.

이 시기에 국경문제와 국제법의 관련 원칙에 대하여 중국지도부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중국-미얀마 간 국경조약 체결과정 중에 중공중앙은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 방침을 점차 확정하게 된다. 첫째, 국경문제는 중국의 평화외교정책에 의거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둘째, 청 왕조 말년, 북양정부, 국민당정부의 국경 회담 자료들은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것, 역사는 단절될 수 없으므로 역사의 흐름을 읽어낼 것, 오늘날의 상황과 국가의 정책에 의거하여 역사를 대할 것. 셋째,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국경에 대해 "이미 구 조약에 의해 확정된 것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¹⁹⁾

1957년 7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저우언라이 총리는 '중국과 미얀마 간 국경문제에 관한 보고(關於中緬邊界問題的報告)'에서 "우리 정부는 국경문제에서 정식조약에 의해 제기된 요구사항은 국제관례에 의거하여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²⁰⁾ 그것은 사실상 이전의 중국정부에서 체결한 국경조약에 대해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것이었다.²¹⁾ 그러나 몇 년 후, 중국과 북한 간 국경문제 처리에 있어 중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지 않았다. 1909년 체결된 '간도조약'을 기초로 국경문제 담판을 진행하여, 두만강 발원지의 드넓은 영토를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대로 양국의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공문을 보

19) 『中共中央關於中緬邊界問題的指示(중국-미얀마 간 국경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 1956年10月31日, 廖心文, 『二十世紀五十年代中國處理陸地邊界問題的原則和辦法(1950년대 육지변경문제처리에 관한 중국의 원칙과 방법)』 (“1950年代的中國,” 國際學術研討會, 2004年8月, 上海. 재인용)

20)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0), 『周恩來外交文選』, 中央文獻出版社, pp. 233, 237-238.

21) 이 시기 중국의 국경문제 처리방침을 둘러싼 총체적인 변화와 관련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李丹慧(2004), “同志加兄弟: 1950年代中蘇邊界關係(동지에 형제를 더하여: 1950년대 중소국경관계),” 『國際冷戰史研究』 第一輯, 秋季號, pp. 71-102.

내 "앞으로 이웃 국가와의 국경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먼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업무는 중앙정부의 공지대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기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각 성과 자치구 인민위원회 외사처에서 전담할 관리를 지정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중국외교부는 국경문제연구는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곳과 이미 확정된 곳 중 분쟁이 있는 곳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시하였다.²²⁾

1958년 7월,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외교부장 천이(陳毅)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국무원은 국경위원회(邊界委員會)를 설립하였다. 국경위원회는 국무원 외사관공실의 직속기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내무부, 중국과학원 역사연구소,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국가측량총국, 민족사무위원회, 지도출판사, 총참모본부 군사측량국과 경비부의 책임자로 구성되었다. 국경위원회의 대표는 외교부장 천이가 담당하였고, 외교부 부부장 쩡용취안(曾湧泉)이 위원회 주임을 담당하였다. 국경위원회의 임무는 국경 업무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국경 문제를 계획대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를 조직하여 조사와 연구, 자료수집, 현장조사를 통해 협상 방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위원회의 업무영역에 국경분쟁과 국경수비에 관한 현안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경위원회는 사회주의국가조(조장: 외교부 사회주의국가사 사장 왕위텐(王雨田))와 자본주의국가조(조장: 외교부 아주사 사장 장원진(章文晉))를 설립하였고, 요녕, 길림, 흑룡강, 감숙, 내몽고, 신강, 서장, 운남, 광서 등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국경업무소조(小組)를 세워 각 지역의 국경 업무를 맡게 하였다. 국경위원회는 잠정적으로 매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 결정사항은 중앙으로 수시 보고하게 하였다. 중국외교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과 북한, 몽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와 인접한 국경지대는 몇 년간 어느 정도 분쟁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양국 국경 거주민들의 생산과 생활, 우호교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22) “外交部關於邊界問題的通知(국경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통지),” 1958년4월25日, 吉林省檔案館, 77/4/1, pp. 15-16.

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1958년 협상을 통한 중국-몽고 간 국경문제 해결, 1959년 중국-소련, 중국-베트남 간 국경문제의 해결을 업무 목표로 정하였다.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두 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그 중 두만강의 일부는 청 왕조와 일본정부 간의 조약에서 획정된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정식으로 획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현재의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된 상태이고 해결방안을 준비 중이다. 천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어 북한 측에 이와 같은 입장을 설명하였지만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고 있지 않다." "둘째, 강줄기가 바뀌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양국은 일부 작은 섬의 귀속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 성 정부에서 조사하여 국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위원회는 금년(1958년) 내에 중북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초보적인 협상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²³⁾ 이상과 같은 문건으로 볼 때, 당시 중국외교부는 중·북 국경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한 문제 해결도 복잡하지 않게 판단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958년 8월 8일, 중국 국무원은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국경업무소조를 설립하고 각 지역의 국경업무를 담당하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하였다.²⁴⁾ 이어서 12월 13일 중공중앙은 '국경업무 강화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국경선이 매우 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경계 지역이 남아 있어, 해방 후 적잖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계선이 획정된 지역 중에서도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다. 현재 우리의 국경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경과 관련된 역사자료와 외교 문서의 미비, 부정확한 지도 특히 미경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경 경비와 대외교섭 업무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국경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국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우리의 바람대로만 일이 성사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적절한

23) "交部關於邊界委員會工作問題的報告(국경위원회업무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보고)," 1958年7月16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90, pp. 5-10.

24) "國務院關於組織邊界工作小組的通知(국경업무소조 조직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1958年8月8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90, p. 4.

시기에 이웃국가와 국경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조속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공중앙은 민족주의 국가와 인접한 성과 자치구 당 위원회에 국경업무를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정할 것을 특별 지시한다.”²⁵⁾ 이를 통해 중공중앙의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서 사회주의국가와의 국경 문제는 급선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북 국경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경위원회 역시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협상방안을 예정 시일인 1958년 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하여 현장조사가 지연되었고, 둘째 중·북 국경분쟁에 있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며 셋째,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 발발로 인해 기타 국경지역 현지조사 업무가 연기되었다. 중·북 국경 현지조사업무에 관한 보고서는 요녕성과 길림성이 완성하였다. 1959년 1월과 12월, 요녕성은 '중·북 국경업무 현황에 관한 보고서'와 '압록강 수풍 저수지 수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59년 3월과 12월, 길림성은 '중·북, 중·소 국경에 관한 조사 보고서'와 '집안(輯安)현 내 수몰지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60년 3월, 국무원 국경위원회는 길림성이 제출한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보고에 대한 답변을 했다. 첫째, 1934년 중국과 조선이 공동 건설한 수풍수력 발전소로 인하여 압록강 지류 원형이 변화를 일으켜 발생된 국경 수비선의 획정에 관련된 문제이다. 요녕성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였고, 압록강 중심선을 경계로 국경 수비선을 다시 확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북 국경지역 교량의 경계를 어떻게 나뉘 경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1955년 6월 8일,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의 연석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중·북 국경 교량의 안전을 위해 안동(단동)-신의주 간 교량에 한해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하고, 그 외 강 인근의 교량은 양측의 국경수비 대표 또는 부대표 간 구체적 협상을 통해 현지 실정에 맞게 경계구역을 확정하여 보호" 하기로 정하였다. 국경수비 책임자가 이 규정에 의거하여 방안을 마련해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25) “中央關於加強邊界工作的指示(국경업무강화에 관한 중앙의 지시),” 1958년12월13일,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58, pp. 37-38.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경위원회는 답신에서 길림성 국경업무소조에 가능한 한 역대 중국에서 출판된 지도에서 장백산 지역 국경선의 변천과정과 근거, 그리고 ‘간도조약’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⁶⁾ 기록문건의 부족으로 길림성 국경소조의 상세한 보고내용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 국경위원회의 지시로 미루어 보아, 당시 두만강 발원지 확정 문제가 중국정부가 주목했던 관심 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 3월 14일, 국무원 국경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 중에 ‘1959년 국경 정세’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사회주의 이웃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기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둘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셋째, 양측이 이미 협상을 통해 국경문제 해결에 합의했으나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첫 번째는 소련과 베트남의 경우이고, 세 번째는 몽고의 경우에 속하고, 두 번째는 북한에 해당된다. 문건에는 ‘북한은 장백산 국경분쟁 지역에 도로와 주택을 건설하고 압록강 상류에 횡강(橫江) 수문을 건설하여 점차 북진하는 상황이었다.’고 묘사되었다. 문건에는 1959년의 현장조사 작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국경위원회의 계획에 의거하여 외교적 투쟁과 더불어 중국-인도 간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기타 국경지역은 현지사정에 맞춰 주로 각 지방 국경소조가 체계적으로 측량, 조사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중·북 국경의 구체적인 업무성과라고는 길림성이 관할국경에 있는 압록강 수풍발전소의 상류 수몰구의 실지조사를 통해 지역범위와 운항위치, 중·북 양국의 국경경계선을 명확히 파악해 약도를 제작한 것뿐이다. 중·북 국경 실지조사가 담보 상태에 놓인 주요 요인은 당시 중국-인도 간 국경지역에서 무장충돌의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이웃국가의 국경 조사는 ‘잠정 지연’ 방침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 형제국가들과 국경 문제에 대한 정식 회담이 개최되기

26) “國務院邊界委員會對國界調查報告的答復(국경선 조사보고에 관한 국무원 국경위원회의 답신),” 1960년3월11日, 吉林省檔案館, 77-6-12, pp. 1-2.

전에 상대방 국경의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위원회는 국경 지방의 조사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경위원회는 1960년의 업무계획에서 형제국가들과 국경문제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엽적인 문제들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북 양국간의 국경문제에 관한 문건에는 ‘현재 회담을 통해 국경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북한측이 장백산과 압록강 상류에 건설 중인 횡강(橫江) 수문 그리고 천지 부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 주택 건설과 같이 현재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심층조사와 연구를 통해 일단 일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분쟁이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⁷⁾

이상의 자료를 통해 1960년 초까지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다음과 같다고 알 수 있다. 첫째, 중·북 국경획정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간도조약’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더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적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강의 지류가 변화하고 수몰지역으로 형성된 국경선 문제가 그 핵심이었다.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은 일부 마련되었다. 셋째, ‘장백산 지역의 국경선 획정’이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다고 인지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중·북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국경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먼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문제해결부터 착수하는 접근방식’으로 방침을 확정하였다.²⁸⁾

27) “國務院邊界委員會1959年工作總結和1960年規劃(국무원 국경위원회의 1959년 최종 업무와 1960년 계획),” 1960년3월14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3/37, pp. 85-89.

28) 한국학자로부터 전달받은 황장엽(당시 김일성 비서)의 회고에 의하면, 1958년 11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하던 황장엽은 백두산이 중국의 영토로 표시된 벽에 걸린 지도를 보고 격노하여 즉시 김일성에게 보고한다.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와의 회동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일성은 ‘중국이 계속 백두산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인민의 정서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의 영토이고,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심사숙고 후 ‘중국과 북한 양국이 국경선을 획정할 때 두만강과 압록강을 둘로 나눈 만큼, 천지도 둘로 나누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의하였고, 황장엽은 후에 김일성이 이 방안은 받아들였다고 회고하였다(서길수, 전게서, p. 203). 황장엽 회고의 진위 여부는 중국과 북한 양국의 비밀문서가 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으나, 필자는 황장엽의 논조에 의문이 든다. 저우언라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천지를 둘로 나눌 것을 제의할 가능성이 희박하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중·북 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국경문제에 관한 일련의 협정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56년 1월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목재운송에 관한 의정서', 1956년 12월 '중·북 두만강유역 치수(治水) 공사에 관한 의정서', 1957년 10월 '중·북 두만강유역 치수 공사에 관한 합의', 1958년 12월 '중·북 양국 변경지역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 1959년 6월 '중·북 양국 변경지방 수풍저수지 양어사업에 공동이용에 관한 의정서', 1960년 5월 '국경하천 운항협조에 관한 협정' 등 이다.²⁹⁾ 이 협정과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기 중국-북한 간 국경 문제에 있어 상호이견이 있었지만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경의 하천자원 개발협력을 하였고,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년 여 동안 중국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하였는지, 중·북 양국 간의 접촉유무에 대해서도 사료의 부족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1961년 7월, 저우언라이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우리의 국경은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만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³⁰⁾ 이상과 같은 중국정부의 중·북 국경문제 처리방침과 구상을 통해 저우언라이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획정 문제에 있어 전면적인 해결을 뒤로 미루기 원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달리 매우 빠르게 변화였다.

IV. 김일성, 국경문제 해결 적극 요구

1960년대 초,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된다. 국내에서는

기 때문이다. 1960년 3월 중국 국경위원회의 두 문건을 보면, 저우언라이가 당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확정된 제안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8년 말 북한이 중국측에 명확한 영토 요구를 이미 제안하였고, 중국지도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朝卷, pp. 102-257.

30) “周恩來與金日成談話記錄,” 1961年7月11日, 外交部檔案館, 204-01454-01, pp. 1-12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의 광풍이 휘몰아 쳤고,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더해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입었고, 농공업 생산의 저조와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양당이 대내외정책에서 입장의 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을 견지하면서 끊임 없는 논쟁을 하였다. 결국 중소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고, 흐루시초프는 격노하여 중국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중국주재 소련전문가들을 전면 철수시켰다. 국내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던 중국은 대외적인 충격까지 더해 이중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중소관계 악화와 더불어 중국 서부에서 인도와의 국경충돌, 그리고 동부에서 장제스(蔣介石)의 대륙 침공의 위협 등 사방의 위기로 인해 중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³¹⁾

이 때, 북한은 돌연 중국 측에 국경 확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현재까지 중국외교부의 기밀해제문건과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年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양측이 접촉한 구체적인 상황과 회담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북 간 국경선 확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략적인 과정은 명확히 알 수 있다.

1962년 2월 18일, 북한 외무상 박성철은 북한주재 중국대사 허더칭(郝德青)과 함께 교외로 사냥을 나갔다. 식사 도중 박성철은 허더칭에게 내부협상을 통한 중·북 국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의하였다. 2월 28일 중국외교부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보고에 관한 답변에서 중국정부는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3월 1일, 허더칭은 박성철을 만나 중국정부의 답변을 전달하면서 회담시간과 장소를 상의하였다. 3월 26일 박성철은 허더칭에게 4월 10일 안동(단동) 또는 신의주에서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부부장급(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3월 30일 저우언라이는 관련 책임자와 중국-북한, 중국-몽고 간 국경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국경선 확정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초안은 이때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북한 외무성과 북한주재

31) 林蘊暉(2008), 『烏托邦運動--從大躍進到大饑荒(1958-1961)(유토피아운동--대약진에서 대기근까지)』, 香港中文大學出版社; 沈志華 主編(2011), 『中蘇關係史綱(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중소관계사개요(1917-1991년까지 중소관계 일부문제에 관한 재검토))』 第二, 三章,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중국대사관은 회담을 통해 국경회담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양측대표단 명단을 확정하였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펑페이(姬鵬飛)와 북한 외무성 부상 유장식(柳章植)을 대표로 하는 중·북 국경회담이 안동(단동)에서 개최되었다. 다섯 차례 연속 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각자 국경획정 방안을 제시하고 휴회하였다. 4월 18일, 허더칭은 신의주에서 북한 외무성 부상 유장식과 회동하여 중·북 국경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같은 날 18일 허더칭은 박성철을 만나 다음 국경회담의 날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성철도 이에 동의하였다.³²⁾ 이와 같은 정황을 통해 북한측의 제안에 중국이 난감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외교부 제2아주사(亞洲司)에서는 이미 강소성 외사관공실에 중·북 국경에 관한 역사자료를 요청한 상태였다. 남경소재 국가 제2문서보관소에 보존된 북양정부와 국민당 정부시기의 문서는 장제스가 남경에서 철수할 때 모든 중요문건을 이미 대만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4월 19일 강소성 외사관공실은 외교부에 '남경사료정리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국경의 천지, 황초평(黃草坪) 등의 자료를 찾지 못했고, 중·북 국경관련 자료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하였다.³³⁾ 외교부에서 강소성에 요청한 자료들의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제시한 획정방안은 천지 귀속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조사 결과 북한의 제안이 중국측의 획정방안 연구와 국경회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월 30일, 중공 중앙 총서기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韓益洙)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는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內交)를 해야 한다. ……우리는 동지관계이니 외교가 아닌 내교(內交)를 해야 완전한 동지관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양국간의 관점은 전부 일치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한 가지 국경획정 문제는 지도 위에 어떻

32) "1962年駐朝使館同朝鮮外務省交涉情況簡報(1962년 북한주재 중국대사관과 북한외무성 협상상황 브리핑)," 外交部檔案館, 106-00644-03, pp. 65, 67, 70-71; "1961至1962年中朝關係大事記," 外交部檔案館, 106-00644-01, p. 19; 『周恩來年譜』 中卷, p. 468.

33) "省外辦關於了解中蒙和中朝邊界歷史資料問題(중몽, 중북 국경역사자료에 관한 성외사관공실의 이해)," 1962年4月19日, 江蘇省檔案館, 3124-0139, 長期, pp. 5-22.

게 선을 긋는가의 문제이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³⁴⁾ 덩샤오핑의 발언은 길지 않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첫째, 중국은 중·북 국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은 북한이 제시한 국경문제 해결방안이 갑작스럽고(분명 큰 문제이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셋째, 중·북 양국은 전적으로 동지관계이며 형제관계이므로 외교는 없고 오직 내교(內交)만 있을 뿐이므로 국경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명을 통해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이미 북한의 요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거나, 더욱 나아가 수용할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월 3일,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책임자와 중·북 국경 문제를 협의하였다.³⁵⁾ (중국의 일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기본 입장을 이미 정한 후 지방관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북경에서 북한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 박금철(朴金哲)과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 등을 접견하였다. 회견 후 별도로 저우언라이와 한익수는 중·북 국경문제에 관해 회담하였다.³⁶⁾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짐작된다). 9월 15일 유장식은 허더칭에게 북한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동의하고, 평양에서의 지핑페이(姬鵬飛)와 회담을 환영한다고 전달한다. 9월 25일 지핑페이는 평양에 도착해 회담을 시작하여, 10월 3일 양측은 회담기록에 서명하였다.³⁷⁾ 10월 11일, 저우언라이와 천이는 북한을 비밀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하였다. 10월 12일 밤, 평양에서 ‘중조변계조약(中朝邊界條約, 중북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³⁸⁾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조변

34) “鄧小平接見韓益洙談話記錄,” 1962年4月30日, 外交部檔案館, 106-01380-18, pp. 61-66.

35) 『周恩來年譜』中卷, p.481.

36) “周恩來接見朝鮮最高人民會議代表團談話記錄,” 1962年6月28日, 外交部檔案館, 106-01379-03, pp. 35-44; 『周恩來年譜』中卷, p. 487.

37) “1961至1962年中朝關係大事記,” 外交部檔案館, 106-00644-01, pp. 31-32.

38) 상계서, p. 33; 『周恩來年譜』中卷, p. 502; 劉樹發 主編(1995), 『陳毅年譜』下卷, 人民出版社, p. 938.

계조약'을 비준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게 중국정부와의 비준서 교환을 위임하였다. 11월 24일, 천이 주제로 열린 국무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중조변계조약'이 통과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심의를 제청한다. 지평페이는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1,300여km에 이르는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비교적 명확한 양국 경계의 하천으로 삼고 있지만, 두 강의 발원지인 백두산(白頭山) 일대는 역사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양국 지도에서의 국경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고 양측의 백두산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여 백두산을 경계로 하는 것이 역사적인 상황과 양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평페이는 국경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은 양국의 우의와 단결을 한 층 더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월 11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평페이와 정봉규(鄭鳳珪) 북한 외교부 대리는 각각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를 대표하여 북경에서 중조변계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국경조약에 의거하여 현지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양측이 합의한 대로 중·북 국경 연합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여 1963년 1월 초 평양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³⁹⁾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류샤오치(劉少奇)와 저우언라이, 박성철이 참석하여 '중조변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⁴⁰⁾

중북 국경 회담과 조약 체결과정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발표된 모든 문서 가운데 국경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에 관해 언급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국경문제의 교섭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토론했고, 양측의 이견과 논쟁에 대한 각각의 태도와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시기 중국 지도자들의 담화 내용과 북한 학술계 동향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고찰하여 정리한 이하에서 제시할 자료를 통해 단서를 찾으려 한다.

1958년 11월 25일,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과의 회담

39) “962年外交部同朝鮮駐華使館交涉情況簡報(1962년 외교부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과의 교섭상황 브리핑),” 外交部檔案館, 106-00644-02, pp. 61-63; “國務院辦公廳大事記編寫組,”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大事記』第8卷(1991, 未刊), p. 169.

40) 劉少奇, “周恩來接見朴成哲談話記錄,” 1964年3月20日, 外交部檔案館, 109-03909-07, pp. 124-129.

에서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노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존중한다. 조선의 민족을 존중하고, 조선로동당을 존중하며, 조선의 지도자를 존중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조선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빚을 졌다. ……당신들의 선조는 조선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었다.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 변까지 떠밀려 왔다는 것은 당신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⁴¹⁾ 마오쩌둥은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종파사건 이후 악화된 중북관계의 국면을 전환하기로 결심한 후로, 북한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우호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했다. 마오쩌둥은 8월 종파사건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로동당 연안과 간부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에 주둔 중이었던 몇 십만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제의하였다.⁴²⁾ 이때, 국무원 국경위원회가 1959년 중·북 국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후 마오쩌둥은 또다시 관대한 태도와 담담한 논조로 중국과 북한 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국경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말하는 사람은 무심히 하지만 듣는 사람은 유심히 듣는 것처럼[言者無心, 聽者有意], 객관적으로 볼 때 마오쩌둥의 발언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 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입을 뗀 김일성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1961년 봄, 중국 동북에서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불법 월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정부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경지역에 여러 곳에 접대소를 만들었고, 또한 월경한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배치하였다. 5월에 이르러서 중국 공안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중공중앙과 외교부에 보고하면서, 국경지역의 사회 안정을 위해 기존의 '중·북 불법월경자처리'에 관한 합의에 의거하여 북한 측과 협상을 건의하였고, 북한주재 중국대사 차오샤오광(喬曉光)이 북한 외무상과 우선 협상하여 북한 측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

41) “毛澤東會見朝鮮政府代表團談話記錄,” 1958年11月25日.

42) 沈志華, ““唇齒相依”還是“政治聯姻”? - 中朝同盟的建立及其延續(1946-1961)(“순망치한”인가, “정치적 혼인관계”인가? - 중북동맹 수립 및 지속),”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63期(2009-03), pp. 147-194; 沈志華, 董潔(2011-03), “朝鮮戰後重建與中國的經濟援助(1954-1960)(한국전쟁 후 중국과의 경제원조 북한의 재건),” 『中共黨史研究』, pp. 48-57.

치를 취해줄 것을 계획하였다. 6월 6일 차오샤오광은 본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받는다. "조선족들이 몰래 월경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본입장은 외교적 수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내부에서 이들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북한 측이 월경자들을 위한 접대소를 설치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하니, 조선인들의 몰래 월경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정황조사를 위해 길림에 갈 필요도 없다."⁴³⁾ 중국은 정치적으로 평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련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중·북 양국 간 협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북한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추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가 올리는 외교관례에 따른 대응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경 거주 조선족의 월경에 대해 용인하였고,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경 문제 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1963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조선민족이 오랫동안 요하(遼河)와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한다. 경박호(鏡泊湖)부근에는 발해의 유적도 발견됐다. ……중국 고대왕조가 조선을 침략하여, 당신들의 땅을 너무 좁게 내몰았던 것에 대해 우리는 조상들을 대신에 사과한다."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두만강과 압록강 서쪽은 줄곧 중국의 땅이라 말하였고,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 하였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이다. 중국의 쇼비니즘(Chauvinism)은 봉건왕조 시대에 매우 심하였다. ……스스로를 천조(天朝), 상국(上邦)이라 칭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다. 모든 것이 역사학자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⁴⁴⁾ 중조변계조약에 서명한 이후 저우언라이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43) "公安部黨組關於朝鮮族越境情況的報告(조선족 주민의 불법월경상황에 관한公安部黨조직의 보고)," 1961年5月10日; 外交部, "公安部關於朝鮮族居民越境去朝問題的報告," 1961年5月24日; "外交部給喬曉光的批示(외교부가 차오샤오광에게 내린 지시)," 1961年6月6日, 外交部檔案館, 118-01026-03, pp. 69-70; 118-01026-05, pp. 131-132; 118-01026-06, p. 104.

44) "周恩來接見朝鮮科學院代表團時的談話," 1963年6月28日, 『外事工作通報』, 1963-10(서길수, 상계서, pp. 474-480. 재인용). 이 문서는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부가 국경선 확정문제에 있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한 해명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국경선 양보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최소한의 심리적인 위안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역사학계 또한 역사상의 중·북 관계에 대해 토론하면서 조선(한반도)을 적극 찬양하고 중국은 폄하하였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가 조사한 결과 북한 사학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역사연구에 있어 주체 확립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역사상 조선의 저명한 인물을 소개한 조선과학원 출판의 『조선의 명인』은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책으로 조선에 대한 찬양일색인 반면 다른 민족들은 폄하하였다. 중국 고전문헌에는 잘못된 곳이 많고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했다고 평하면서,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한 투쟁을 강조하고 조선만이 중국을 물리칠 수 있으며, 조선의 영웅 양만춘(楊萬春)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쓴 화살에 의해 당태종이 애꾸눈이 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조선이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고대 의술 역시 중국보다 한 단계 위였으며, 일본의 문화도 조선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⁴⁵⁾ 북한의 역사학계는 기본적으로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부정하였고, 이는 역사학의 연구가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았으며, 조선은 문명고국으로서 독특한 역사발전의 노선이 있다고 하였다.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는 소련 연해주와 일본 서북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동북지방의 동부 또한 영향을 받았다”. 『조선의 명인』에서는 중국의 『원사(元史)』의 저자가 대국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으며, 소련과학원에서 출판된 『세계통사(世界通史)』 제3권에 수록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의 논점을 비판하면서, 몽고가 중국의 양대 왕조 금(金)과 송(宋)을 멸망시키고 원(元)제국을 건국하였으나 조선에게 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청일전쟁시기 중국은 조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침략한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정체성 원칙을 수호하면서 먼저 봉건적 사대주의 역사학자의 객관주의

데 필자는 아직 중국 문서에서는 원본을 찾지 못하였지만, 논조와 사용 어휘를 미루어볼 때 이 문서가 진본으로 판단된다.

45) “駐朝使館的報告(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의 보고),” 1963年4月30日, 外交部檔案館, 106-01134-05, pp. 47-50.

태도 반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⁴⁶⁾는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동향이 중·북 국경회담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지식층과 역사학계가 중국과 북한의 역사관계 연구에 있어 큰 제약을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에게 유리한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불리한 발언은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1963년 11월 6일,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강성(康生)은 선전간부회의의 연설에서 중국사학계에게 북한학자들이 소련과학원에서 편찬한 『세계통사』에 대한 비평논문을 추천하면서 중국 역사학계에 만연한 “맹목적인 쇼비니즘”을 질타하였다. 이어 요녕성(遼寧省) 개평(蓋平)현은 고구려 연개소문을 소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으로 “연개소문은 조선의 민족영웅”이지만, 중국은 도리어 중국의 동쪽(고구려)을 정벌한 설인 귀(薛仁貴)가 영웅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며,⁴⁷⁾ 북경대학 역사학과에는 단 한 명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없고, 그들은 북한에서 발표한 논문에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강성은 인민출판사의 회의에 참석하였다. 당시 인민출판사는 저명한 역사학자 천인커(陳寅恪)의 저서 『논재생연(論再生緣)』의 출판을 계획하며, 특별히 황추원(黃秋耘)을 초빙하여 그 책의 책임편집을 맡겼다. 이 회의에서 강성은 『논재생연』의 출판금지를 요구했다. 왜냐하면 탄사(彈詞)소설 『재생연(再生緣)』 중 ‘동정(東征)’이라는 표현을 삽입했기 때문이다.⁴⁷⁾ 물론 천인커가 병을 핑계로 강성과의 만남을 완곡히 거절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일도 있어 강성이 책의 출판금지를 요구하며 공적인 일로 개인적인 원한을 풀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강성은 근본적인 의도는 이를 본보기로 중국의 학자들 특히 역사학자들이 중·북 관계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중·북 국경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중국은 또 어떻게 양보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46) “中國科學院哲學史會科學部編印,” 『簡訊』, 第143期(1963-09), 第169期(1964-11), 外交部檔案館, 106-01134-01, pp. 51-59, 106-01134-02, pp. 60-62. “사대(事大)”는 『맹자』의 “이소사대(以小事大)”에서 나왔다. 사대주의는 조선왕조가 청왕조의 사상과 정책에 충성을 다한 것을 의미한다.

47) 陸健東(1995), 『陳寅恪的最後二十年(천인커의 마지막20년)』, 三聯書店, pp. 364-370. 1965년 개평(蓋平)현은 개(蓋)현으로 개칭되었다.

V. '중조변계조약'과 관련문건의 내용

1962년 북한의 영토에 관한 요구와 관련된 핵심문제는 앞서 소개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핵심은 장백산 천지의 귀속과 그와 관련된 두만강 발원지의 확정문제이다. 10년 후쯤(1972년), 저우언라이가 미국 대통령 닉슨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화산으로 형성된) 호수를 공동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였다.⁴⁸⁾ 호수(火山湖, Crater Lake)는 '천지'를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천지를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2년 10월 체결한 국경조약의 핵심내용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외교부에서 출판된 『중조변계사무조약집(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에는 '중조변계조약'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외교부와 관련 성 정부의 문서보관소에도 이 조약문이 아직 기밀해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조변계조약'과 관련문서는 한국과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진위여부가 중조변계조약의 내용과 중·북 회담 결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 광범위하게 공개된 '중조변계조약(中朝邊界條約)'과 관련문서에 대해 고증하고자 한다.

2000년 10월 16일자 한국의 '중앙일보'에 '북·중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 공개 불가한 기밀문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독점으로 보도되었다.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중앙일보 취재팀은 최근 중국의 헌책방에서 1974년 6월 중국 길림(吉林)성 혁명위원회 외사관공실 편인(編印)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 조약, 협정, 의정서 회편(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같은 날 중앙일보의 기타 지면에 "'북중국경조약'의 내용개요", "'북중국경조약' 발굴의 의의" 등이 보도되었다.⁴⁹⁾

4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Richard Nixon, " Henry Kissinger, Zhou Enlai, et al.. 23 February, 1972(Taylor Favel, 전게서, pp. 113-114. 재인용).

49) 서길수, 전게서, p. 298.

한 달 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석(통일부장관 역임)이 편찬한 『북중관계(1945-2000)』에서 1962년 10월 12일 체결한 '중조변계조약'과 1964년 3월 20일 체결한 "'중조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의 한글 번역본 전문이 부록으로 공개되었다. 이 조약과 협정서는 중국에서 출간된 문서 모음집(匯編)이며, 비공개 출판물로서 겉표지에 '기밀문건, 보관주의'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의 비판을 받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주덕해(朱德海)의 자료, '연변당내 자본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최대 당권과 주덕해의 매국적인 범법 행위'와 후에 문화대혁명 중 박해를 받아 사망한 주덕해의 복권에 관한 공식문서인 '중공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의 주덕해 동지 복권을 위한 결의' 등의 자료를 대량 이용하였다.⁵⁰⁾ 2007년 12월,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이 문건 모음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부자료'로 보존하였다. 그 중 국경 문제와 관련된 중국측의 미공개 문서는 위의 두 개의 문서 외에 중국과 북한 양국 정부대표단의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關於中朝邊界問題的會議紀要)'(1962년 10월 3일), 중국국무원의 '중·북 경계하천 공동이용 위원회대표단의 북한회담 후 체결한 중·북 경계하천 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상호 협정 및 관련보고에 관한 통지'(1964년 7월 20일)가 수록되어 있다.⁵¹⁾ 2009년 한국에서 출판된 서길수의 『백두산변계연구』는 중·북 국경에 관한 조약과 의정서 및 회담기요의 중·한본 모두 부록으로 실려 있다.⁵²⁾ 현재 중국과 한국의 인터넷에서 인용되는 중·북 국경 조약문은 모두 위에서 소개한 한국 저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중북변계조약과 관련 문서의 완전한 중국어판 전문을 찾지 못한 상황이 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한역본과 중국에서 이미 출판된 관련자료 또는 문서를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고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⁵³⁾

50) 이종석, 전게서, 서문, pp. 321-324, 325-343.

51)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 編(未刊, 1974年),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 (중북.중소.중몽 유관조약 협정.의정서회편)』, 東北亞歷史財團 第三研究室 韓國語翻譯本 “內部資料”(3), 東北亞歷史財團, 2007(『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韓國語本).

52) 서길수, 전게서, p. 373-461.

53) 북경대학 박사과정의 동제(董潔)는 한국에서 방문학자 기간 중, 길림성 혁명위원회 외사관공실(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에서 편찬한 중국어본 문서모음집을 열람

필자는 먼저 『장백조선족자치현지(長白朝鮮族自治縣志)』에 중조변계조약과 관련된 해당 현 관할의 변계선의 방향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글본의 같은 단락을 대조해 본 결과 두 내용과 서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⁵⁴⁾ 이 외에 필자는 한글본으로 간행된 문서와 이미 출판된 『중화인민공화국 변계사무조약집』과 『중화인민공화국조약집』 가운데 관련문건을 비교 대조해 보았는데, 중국측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중·북 양국 대표단의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 '중조변계조약', '중조변계의정서' 등의 문서를 제외하고, 이미 출간된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이 한글본 문서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일치한다.⁵⁵⁾ 따라서 필자는 한국에서 발굴한 길림성외사관 공실 편인의 문건 모음집은 진품이고, 중조변계조약 등 문건의 한글본 또한 믿고 사용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결정적인 문건의 출현으로 중국 문서개방의 낙후된 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중·북 변계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의 기록에 근거하여 196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평페이와 유장식을 단장으로 하는 중·북 대표단이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부가 중·북 변계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와 절차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⁵⁶⁾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서명한 '중조변계조약'과 천이와 박성철이 서명한 '중조변계의정서'의 체결로 중·북 간 국경이 최종 확정되었다. 양국 간 논쟁이 된 천지와 두만강 발원지의 획정에 관한 조약문과 의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백산 천지는 두 개로 나누어 장백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기 위하여 이종석 선생을 방문했으나, 이종석은 선생은 당시 자료 정리중이라는 이유로 문제 열람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 후에 동제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중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부자료”로 설명되어 있는 한국어 번역본을 발견하여 전문을 복사하였다.

54) 韓哲石 主編(1993), 『長白朝鮮族自治縣志』, 中華書局, p. 312; 『中朝邊界條約』, 1962年10月12日,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한국어판), pp. 11-13, 17-54.

55)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中朝卷,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編, 『中華人民共和國條約集』第1-13集, 法律出版社, 世界知識出版社, 1957-1965年.

56) “關於中朝邊界問題的會談紀要(중북국경문제에 관한 회담요록),” 1962年10月3日;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 한국어판, pp. 14-16.

산마루 서남단 위의 2520고지와 2664고지(청석봉) 사이의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맞은편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천문봉)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이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북한에 속한다. 두만강 발원지의 확정에 관해서는 천지 동쪽의 국경선 산마루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직선으로 2114고지까지, 2114고지에서 다시 직선으로 1992고지까지, 1992고지에서 다시 직선으로 1956고지를 거쳐 1562고지(쌍목봉 북쪽 봉우리)까지, 1562고지에서 다시 직선으로 1332고지까지, 1332고지에서 다시 직선으로 두만강 상류 지류 홍토수(紅土水)와 북쪽의 지류가 만나는 곳(1283고지 북쪽)까지, 이 곳에서부터 경계선은 홍토수(紅土水)의 중심선을 따라 아래로 홍토수(紅土水)와 약류하(弱流河)가 합쳐지는 곳까지이다. 천지 이남의 국경선은 압록강 발원지의 확정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외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451개의 섬 및 사주(모래톱)의 귀속(중국 187개 소유, 북한 264개 소유)과 압록강 하구 밖의 양국 해역의 확정이 확정되었다.⁵⁷⁾

‘중조변계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북 양국은 중·북 변계 연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대대와 여섯 개의 소조를 두어 1963년 5월 13일부터 11월 15일에 걸쳐 중·북 국경에 대한 전면적인 탐사를 진행하여 경계말뚝 설치와 경계선이 되는 강의 섬과 사주의 귀속을 확정하였다. 경계말뚝은 155cm와 129cm (지면에 노출되는 부분) 두 종류로 철근시멘트로 제작하였고, 말뚝 중심에는 쇠 드릴을 박아 넣었다. 말뚝 위에는 ‘중국’ 혹은 ‘조선’을 글자로 새겨 넣었고 일련번호와 해당연도를 새겨 넣었다. 말뚝의 관리와 보수는 흘수는 중국 측이, 짝수는 북한 측이 맡기로 하였다.⁵⁸⁾

이에 따라 장백산 내 중·북 국경 1334km 분계선이 확정되었고, 중국에 속해 있던 98km²의 천지는 북한이 54.5%, 중국은 총 면적의 45.5%만

57) 『中朝邊界條約』, 1962年10月12日, 『關於中朝邊界的議定書(중북국경에 관한 협정서)』, 1964年3月20日. 다음 자료집을 참조할 것. 『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韓國語本, pp. 11-13, 17-54; 서길수, 전개서, pp. 373-384, 391-461.

58) 安龍禎 主編(1996), 『延邊朝鮮族自治州志』, 中華書局, p. 497; 韓哲石 主編(1994), 『長白朝鮮族自治縣志』, 中華書局, pp. 312-313.

점유하게 되었다.⁵⁹⁾ 두만강 발원지역은 1909년 '간도조약'부터 1962년 '중조변계조약'까지 지도축적으로 추산하여 중국이 양보한 영토는 약 1200 km²이다.

1964년 5월 5일, 중국과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경조약의 기초 위에 '중·북 국경하천 공동 이용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共同利用和管理中朝界河的互助合作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양측은 중·북 국경하천공동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북 양국의 경계하천을 공동 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였다.⁶⁰⁾

그러나 북한은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중국 측에 중·북 양국간 새 국경선 획정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964년 8월 북한 측은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대사관에 새 중국지도를 요구하였다. 보름 후 중국 측은 새 지도가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고 답신하고, 새 지도가 출판되는 대로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⁶¹⁾ 사실 1964년 6월 지도출판사에서 4,000,000:1 축척의 최신 '중화인민공화국지도'가 출판되었고, 중국과 북한간 국경선은 1962년 조약에 의거해 제작하였다.⁶²⁾ 중국이 무엇 때문에 북한에 새 지도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후에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켰는지에 관해서는 증명된 사료가 없지만, 새로운 국경선이 하루라도 빨리 현실로 이루어지길 북한 측에서 희망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65년 4월 14일,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측에 북한에서 출판된 표준 북한지도를 보내면서 중국이 앞으로 북한 지도를 펴낼 때 이를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희망하였다.⁶³⁾

59) “延邊黨內最大的走資本主義道路黨權派朱德海的賣國罪行(연변당내 자본주의노선을 견지하는 최대당권파 주덕해의 매국적인 범법행위),” p. 1; “中共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關於爲朱德海同志平反恢復名譽的決議(중공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의 주덕해 동지 복권을 위한 결의),” p. 7(이종석, 전계서, p. 233. 재인용).

60)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朝卷, pp.258-261.

61) “駐朝使館致對外文委電(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이 외문위에 보낸 전보),” 1964年8月17日; “對外文委致駐朝使館電(외문위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 보낸 전보),” 1964年9月3日, 外交部檔案館, 114-00174-01, pp. 25027.

62) “國務院關於地圖上我國邊界線畫法的內部通知,” 1965年1月18日, 江蘇省檔案館, 312 4-0124, 短期, pp. 43-46.

63) “外交部與朝鮮駐華使館交涉情況(외교부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의 교섭 상황),”

북한은 지나치게 걱정하였다. 1964년 5월 중국외교부는 '중·북국경협정에 관한 해석요점전달(關於劃定中朝邊界的傳達解釋要點)'과 '중북 국경지역 강화를 위한 관리 업무(關於加強對中朝邊界地區的管理工作)'라는 제목의 두 지시문을 연속하여 발표하였다.⁶⁴⁾ 또다시 7월 20일 국무원은 관련부처와 요녕성, 길림성에 '중북 경계하천 호조합작 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내 세밀히 연구하여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⁵⁾ 1965년 1월 18일 국무원은 내부통지를 내려 과거 출판된 모든 지도의 판매를 중단시켰다.⁶⁶⁾ 1월 31일 중국 대외무역부는 또다시 산하의 각 부서에 통지문을 내려 1964년 6월 이전 출판된 지도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시켰다.⁶⁷⁾

중국과 북한이 현재까지 1962년 체결된 변계조약과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1962년 12월 저우언라이가 몽고 지도자 제등바르(Tsendenbal)와의 회동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 발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⁶⁸⁾ 언뜻 듣기에 중국은 변계 회담의 결과 발표를 꺼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 변계조약 체결 당시 중국이 북한에 한 발 양보 했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은 주덕해를 장백산 천지를 팔아넘긴 장본인이라 비판하였다.⁶⁹⁾ 당시 중국지도부는 중·북 관계연구에 있어 국내학자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체감하면서 정부가 조약 내용을 발표한다면 인민들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

1965年1月2日至12月25日, 外交部檔案館, 106-01225-05, pp. 97-98.

64) "遼寧省與朝鮮平安北道友好往來情況的報告(랴오닝성과 북한 평안북도 우호교류현황에 관한 보고)," 1965年2月9日, 外交部檔案館, 106-01236-01, pp. 1-8.

65) "國務院文件(64)國外辦字337號," 1964年7月20日(『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 한국어판, pp. 55-57. 재인용)

66) "國務院關於地圖上我國邊界線畫法的內部通知," 1965年1月18日, 江蘇省檔案館, 3124-0124, 短期, pp. 43-46.

67) "外貿部關於涉及我國邊界線的地圖出口管理問題的通知," 1965年1月31日, 江蘇省檔案館, 3124-0124, 短期, pp. 47-48.

68)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Zhou Enlai and J. Zedenbal (from East German archives;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 115에서 재인용).

69) "延邊黨內最大的走資本主義道路黨權派朱德海的賣國罪行(연변당내 자본주의노선을 견지하는 최대당권파 주덕해의 매국적인 범법행위)," pp. 1-2(이종석, 전계서, p. 232, 235. 재인용).

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조약의 발표를 원치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북한 측의 태도에 관해서는 한국학자 이종석이 본인 저서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조약체결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고, 통일 전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당사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당시 북측의 입장 또한 이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⁷⁰⁾ 이 증언이 사실이더라도, 북한의 지도자가 국경회담을 통해 그들이 얻은 실익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고 국경조약의 내용 또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은 조금도 부인할 여지가 없다.⁷¹⁾

‘중조변경의정서’ 서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64년 10월 7일, 마오쩌둥은 조선로동당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중·북 국경문제를 언급하였다. 다음은 대화 일부분으로 양측의 국경회담 결과에 대한 태도를 극명히 보여 주고 있다.

마오쩌둥: “조선의 영토는 중국이 아닌 수양제, 당태종, 무척천이 점령한 것이다. 북한의 국경은 요하의 동쪽으로 봉건주의 시대에는 조선인이 압록강 강변까지 쫓겨 있었다.”

박금철(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는 요하의 동쪽지역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국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마오쩌둥: “그래서 우리가 동북지역 전체를 북한의 후방으로 만들었다. 이는 요하유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최용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국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70) 이종석, 전계서, p. 235.

71) 1964년 8월, 북한은 보고 형식으로 중국외교부에 답신을 보내 중국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측은 현재 북 소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선박이 북 소 양국 공동소유의 두만강 중 15km의 출해구(出海口)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바다로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第二亞洲司長姚廣接見朝鮮駐華大使林世昌談話記錄(제2 아시아사 사장 야오광과 중국주재 북한대사 박세창과의 회담기록),” 1964년8월21日, 外交部檔案館, 106-01434-07, pp. 56-58.

박금철: "북중 양국의 국경은 1962년에 이미 타결되었다. 저우언라이 총리도 백두산과 천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상 동지도 동북지역을 북한의 후방과 국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한다."

마오쩌둥: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 곳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적이 북경, 상해, 남경을 공격한다면 북한에게도 비교적 좋은 상황이다. 그 때는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아닌 항미원화(抗美援朝)가 되는 것이다."⁷²⁾

VI. 결론

자료가 불충분하게 발굴되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1950-60년대 중·북 양국의 국경문제 처리의 역사적 과정을 대체로 반영해 낼 수 있었다.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문제 처리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역사상 이미 체결된 국경조약을 존중한다면, 중·북 양국 간에는 중대한 국경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1909년 '간도조약' 체결로 두만강 발원지와 발원지대가 중국과 조선의 국경선으로 이미 확정된 만큼, 강의 지류변화로 형성된 작은 섬 및 사주(沙洲)의 귀속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입장은 일치한다.

둘째, 북한정부가 '간도조약'과 그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2년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경문제 해결을 건의하였다. 북한의 기본 요구사항은 '간도조약' 중에서 두만강 발원지의 범위확정 부분을 수정하여 천지와 두만강 발원지역을 북한의 영토범위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72) "毛澤東會見朝鮮黨政代表團談話記錄," 1964年10月7日.

장백산 천지의 반 이상과 석을수(石乙水) 북쪽의 대규모 영토를 북한에게 주었으며, 나아가 북한의 요구대로 북측에서 장백산을 백두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2개월 후 북한의 독촉으로 양국 정부는 서둘러 의정서를 교환하고 실지조사 후에 중조변계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넷째, 중조변계조약의 체결과정은 짧고 간단했지만,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지도부의 국경협상에 대한 태도는 곰곰이 새겨볼 만하다. 특히 결정적으로 마오쩌둥은 국가의 근본 이익이 달린 영토와 국경문제 있어 왜 그토록 쉽게 양보했는가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당시 중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소 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각국 공산당은 대부분 소련을 지지하였고,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진영에서의 고립을 서둘러 탈피하고자 적극적으로 주변의 북한과 베트남, 일본공산당을 좌파그룹으로 조직하였다. 소련은 자국의 역량으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유인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때마침 경제침체의 수렁에 빠져 대외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바로 이 때, 북한이 국경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일성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북한이 제시한 영토에 관한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다. 1963년 9월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류샤오치는 자신을 수행했던 신화사(新華社) 사장 비서 왕페이(王飛)에게 “사회주의국가와 국경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와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⁷³⁾ 류샤오치의 탄식을 통해 볼 때 중국지도부 역시 북한의 영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결정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지도자들이 내교(內交)가 외교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마오쩌둥의 국가경계에 대한 이념과 관련이 있다. 1935년 10월, 마오쩌둥이 지은 시, 『염노교 곤륜(念奴嬌 崑崙)』 편에 그의 기백이 잘 나타나 있다.

73) “필자와 왕치싱(왕페이의 아들, 王啓星, 王飛) 과의 인터뷰 기록,” 2011년2월7일.

지금 나는 곤륜산(崑崙山)에 올랐네
더 이상 높을 필요도 더 많은 눈도 필요가 없네
평안함을 얻어 하늘에 의지할 수 있다면, 보검을 빼어 너를 세 조각으로 잘라내리라
한 조각은 유럽에게 남기고, 한 조각은 미국에게 선물하고, 한 조각은 중국에게 돌려주리라
세계가 평화로워 지리니, 온 천하 모두가 뜨거운 투쟁을 식히리라⁷⁴⁾

만약 이 시가 시인으로서 마오쩌둥의 낭만적 기질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가 국가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의 모든 행동은 이 시상에 반영된 것처럼 확실히 실천에 옮겼을 것이다. 1959년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여 저우언라이가 위기 수습에 분주한 와중에, 마오쩌둥은 11월 인도공산당 총서기 고시(Ajoy K. Ghosh)와 인도공산당 좌파대표단을 접견하였다. 마오쩌둥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을 언급하면서, 인도 인민이 정권을 장악하는 순간 중국은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맥마흔 라인 이남 9만km²의 영토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⁷⁵⁾

마오쩌둥의 이 발언을 보면 당연히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1728년 안남국(安南國)왕이 운남(雲南)과 분쟁 중인 120리의 영토를 안남국으로 귀속시켜줄 것을 진언하였고, 옹정제(雍正帝)는 80리까지 양보하였으나 안남국 왕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옹정제가 "짐(朕)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모든 신하가 이에 복종하며 온 나라가 내 영토(版籍)에 예속되어 있다. 안남국 또한 이미 속국으로 경계 삼았으니, 한 척의 땅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40리의 땅을 따져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옹정제의 뜻을 알게 된 안남국 왕은 "천자의 훈계를 받들어 죄를 뉘우치옵니다"라며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에 옹정제는 다시 "운남이 짐의 땅(內地)이고 안남이 짐의 속국(外藩)인데, 이 40리의 땅은 조금도 구분할 것이 아니다"라며,

74) 毛澤東(2004), 『毛澤東詩詞選』, 人民文學出版社 p. 55.

75) “毛澤東與印共左派學習代表團談話記錄(마오쩌둥과 인도공산당 좌파학습대표단과의 담화기록),” 1967년12월13日.

마침내 그 땅을 안남국의 왕에게 선사하며, 주둔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⁷⁶⁾

이 두 가지 사유방식이 이토록 비슷할 수 있을까! 마오쩌둥은 중국 역사상의 천조(天朝)의식과 무산계급 세계혁명의 이상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을 따름이다. 중국의 천조(혹은 세계혁명)관념에서는 국경을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존립 자체가 불가하다. 상대방이 천조(혹은 혁명진영)에게 귀복하면 더 많은 땅을 내 주어도 무방한데, 이는 상대방이 이미 천조(혹은 혁명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에서 중국고대왕조의 통어환우(統御寰宇, 온 우주를 통치하다),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주권개념과 정책은 이미 구미열강의 현대적 ‘민족국가’의 주권 개념과 정책에 의해 사라졌다. 내지(內地)·내번(內藩)·외번(外藩)은 천조관념에서의 ‘영토(版籍)’와 다름없으며 ‘천조는 이웃나라와의 경계가 없다(天朝無隣國)’는 영토에 관한 구시대적 풍경도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⁷⁷⁾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주의진영’이념의 지도 아래 ‘혁명국가’를 ‘형제’로 보고 이를 국경과 주권문제를 처리하는 정책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역사상의 후퇴가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북 국경문제의 해결방식과 그 결과는 1950-60년대 중·북 관계가 충분히 정상적이고 현대화된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76) 王之春(1989), 『清朝柔遠記』, 中華書局, pp. 68-69.

77) 이 문제연구의 전반을 다루는 훌륭한 연구가 있다. 劉孝原(2008), “中國的民族, 邊疆問題及其領土屬性的近代轉型,” 李小兵, 田憲生 編, 『西方史學前沿研究評析』, 上海辭書出版社, 2008, pp. 1-23.

| 참고문헌 |

□ 한국

- 서길수(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서울: 여유당.
이종석(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김명기(2008). “북중 국경조약과 간도 - 간도 영유권 회복이 최상의 민족적 소명이며 국민적 성찰이 필요.” 『북한』.
양태진(2007). “북중변계조약을 통해 본 북방한계선 -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vol. 32.

□ 중국_단행본

- 王之春(1989). 『清朝柔遠記』 中華書局.
劉孝原. “中國的民族, 邊疆問題及其領土屬性的近代轉型.” 李小兵, 田憲生 編(2008). 『西方史學前沿研究評析』 上海辭書出版社.
毛澤東(2004). 『毛澤東詩詞選』 人民文學出版社.
編寫組(1996). 『中朝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姚忠明 等. “周恩來總理解決中緬邊界問題的輝煌業績(중국-미얀마 국경문제 해결에 있어 저우언라이 총리의 눈부신 업적).” 裴堅章 編(1989). 『研究周恩來--外交思想與實踐(저우언라이 외교사상과 실천 연구)』 世界智識出版社.
陸健東(1995). 『陳寅恪的最後二十年(친인커의 마지막20년)』 三聯書店.
金沖及 主編(1998). 『周恩來傳』 下卷, 中央文獻出版社.
楊昭全 孫玉梅(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楊昭全 主編(1998,未刊). 『中朝邊界研究文集』 下冊. 吉林省社會科學院.
陳朝陽. “中韓延吉界務之交涉(1882-1909).”
林蘊暉(2008). 『烏托邦運動--從大躍進到大饑荒(1958-1961)(유토피아운동 --대약진에서 대기근까지)』. 香港中文大學出版社.
沈志華 主編(2011). 『中蘇關係史綱(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중소관계사개요(1917-1991년 까지 중소관계 일부분제에 관한 재검토))』 第二, 三章.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중국_연구논문

- 馮月, 齊鵬飛(2006, 06). “中緬邊界談判述略.” 『湖南科技大學學報』.
- 刁書仁(2001-4). “中朝邊界研革史研究.” 『中國邊境史地研究(중국변경 역사지리연구)』.
- 楊昭全, 孫玉梅 編(1994). 『中朝邊界研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 蔡建(2004-11). “中朝邊界爭執與<圖們江中韓界務條款.” 『韓國研究論叢』. 『1950年代的中國』國際學術研討會, (2004年8月, 上海).
- 劉金潔(2006-01). “中緬邊界中的“麥克馬洪線”問題及其解決(중국-미얀마 국경문제 중 “맥마흔라인”문제와 그 해결).” 『當代中國史研究』.
- 沈志華, 董潔(2011-03). “朝鮮戰後重建與中國的經濟援助(1954-1960)(한국전쟁 후 중국과의 경제원조 북한의 재건).” 『中共黨史研究』.
- 沈志華(2009-03). ““唇齒相依”還是“政治聯姻”? - 中朝同盟的建立及其延續(1946-1961) (“순망치한”인가, “정치적 혼인관계”인가? - 중북동맹 수립 및 지속.)”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63期.
- 中國科學院哲學史會科學部編印. 『簡訊』. 總第143期(1963-09). 總第169期(1964-11).
- 李丹慧(2004年秋季號). “同志加兄弟: 1950年代中蘇邊界關係(동지에 형제를 더하여: 1950년대 중소국경관계).” 『國際冷戰史研究』 第一輯.
- 李花子(2007-2). “朝鮮王朝的長白山認識.” 『中國邊境史地研究』.

□ 중국_문건집/연보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編(2004).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中朝卷. 世界知識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0). 『周恩來外交文選』. 中央文獻出版社.
- 劉樹發 主編(1995). 『陳毅年譜』下卷. 人民出版社.
- 國務院辦公廳大事記編寫組(1991, 未刊).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大事記』 第8卷.
-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辦公室 編(未刊, 1974年). 『中朝, 中蘇, 中蒙有關係

約, 協定, 議定書匯編 (중북.중소.중몽 유관조약 협정.의정서회 편). 『東北亞歷史財團 第三研究室, 韓國語翻譯本 “內部資料”(3). 東北亞歷史財團. 2007.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中朝卷.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編. 『中華人民共和國條約集』第1-13集. 法律出版社. 世界知識出版社. 1957-1965年.

“關於中朝邊界問題的會談紀要(중북국경문제에 관한 회담요록).” 1962年10月3日.

唐屹 主編(2001, 未刊). 『外交部檔案叢書 界務類第一冊 東北卷(외교부 당안총서 국경업무류 제1집 동북권)』. 中華民國外交部編印.

亞西司關於國防部二廳情報蘇方將延吉等地劃歸朝鮮消息之分析.

安龍禎 主編(1996). 『延邊朝鮮族自治州志』. 中華書局.

韓哲石 主編(1993). 『長白朝鮮族自治縣志』. 中華書局.

“延邊黨內最大的走資本主義道路黨權派朱德海的賣國罪行(연변당내 자본주의노선을 견지하는 최대당권과 주덕해의 매국적인 범법행위).”

“中共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關於爲朱德海同志平反懷復名譽的決議(중공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의 주덕해 동지 복권을 위한 결의).”

□ 중국_외교부당안관

“周恩來與金日成談話記錄.” 1961年7月11日. 外交部檔案館. 204-01454-01.

“1961至1962年中朝關係大事記.” 外交部檔案館. 106-00644-01.

“1962年駐朝使館同朝鮮外務省交涉情況簡報(1962년 북한주재 중국대사관과 북한외무성 협상상황 브리핑).” 外交部檔案館. 106-00644-03.

“1962年外交部同朝鮮駐華使館交涉情況簡報(1962년 외교부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과의 교섭상황 브리핑).” 外交部檔案館. 106-00644-02.

“公安部關於朝鮮族居民越境去朝問題的報告.” 1961年5月24日; 外交部給喬曉光的批示 (외교부가 차오샤오광에게 내린 지시). 1961年6月6日. 外交部檔案館. 118-01026-03; 118-01026-05; 118-01026-06.

“駐朝使館致對外文委電(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이 외문위에 보낸 전보).” 1964年8月17日.

- “對外文委致駐朝使館電(외문위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 보낸 전보).”
1964年9月3日. 外交部檔案館, 114-00174-01.
- “外交部與朝鮮駐華使館交涉情況(외교부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의 교섭 정
황).” 1965年1月2日至12月25日. 外交部檔案館, 106-01225-05.
- “遼寧省與朝鮮平安北道友好往來情況的報告(랴오닝성과 북한 평안북도 우호교
류현황에 관한 보고).” 1965年2月9日. 外交部檔案館, 106-01236-01.
- “駐朝使館的報告(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의 보고).” 1963年4月30日. 外交部檔案
館, 106-01134-05.
- “外交部檔案館.” 106-01134-01. 106-01134-02.
- 『中韓國境糾紛(중한국경분쟁)』. (臺灣)國史館, 020-0100202-0003.
- 『韓國疆域研究』. (臺灣)外交部檔案館, 097.1-0004.
- 熊式輝致王世杰電, “蘇特工在北滿及中朝邊地測繪(슌스후이가 왕스제에게 부
친 전보, 북한 및 중북국경에서 소련특공대의 측량작업).” 1947年4
月 13, 22日.
- 國防部二廳致外交部(국방부 제2청이 외교부에 보냄). “最近蘇聯在我東北
活動概況(최근 중국동북지역에서 소련의 활동개황).” 1948年7月10
日.
- 延邊地委(1985, 未刊). “關於延邊民族問題(연길민족문제에 관하여).” 1948년
8월 15일.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 編. 『中共延邊吉東吉敦地委
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 第一集.
- 『中共中央關於中緬邊界問題的指示(중국-미얀마 간 국경문제에 관한 중
공중앙의 지시)』. 1956年10月31日.
- 廖心文. 『二十世紀五十年代中國處理陸地邊界問題的原則和辦法(1950년대
육지변경문제처리에 관한 중국의 원칙과 방법)』.
- “外交部致東北人民政府函(외교부가 동북인민정부에 보낸 서신).” 1950年4月24
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以下 外交部檔案館), 106-00021-03.
- “伊犁州外事分處關於伊犁地區中蘇邊境調查報告(이리지구 중 소국경조사에
관한 이리지구 외사분소의 보고).” 1960年9月24日. 新疆伊犁州檔案館,
11/1/134.
- 『中共中央關於中緬邊界問題的指示(중국-미얀마 간 국경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지시)』. 1956年10月31日. 廖心文. 『二十世紀五十年代中國處理陸地邊界問題的原則和辦法(1950년대 육지변경문제처리에 관한 중국의 원칙과 방법)』.

“外交部關於邊界問題的通知(국경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통지).” 1958年4月25日. 吉林省檔案館, 77/4/1.

“外交部關於邊界委員會工作問題的報告(국경위원회업무문제에 관한 외교부의 보고).” 1958年7月16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90.

“國務院關於組織邊界工作小組的通知(국경업무소조 조직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1958年8月8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90.

“中央關於加強邊界工作的指示(국경업무강화에 관한 중앙의 지시).” 1958年12月13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2/258.

“國務院邊界委員會對國界調查報告的答復(국경선 조사보고에 관한 국무원 국경위원회의 답신).” 1960年3月11日. 吉林省檔案館. 77-6-12.

“國務院邊界委員會1959年工作總結和1960年規劃(국무원 국경위원회의 1959년 최종업무와 1960년 계획).” 1960年3月14日. 廣西自治區檔案館. X50/3/37.

“省外辦關於了解中蒙和中朝邊界歷史資料問題(중몽, 중북 국경역사자료에 관한 성 외사관공실의 이해).” 1962年4月19日. 江蘇省檔案館. 3124-0139. 長期.

“鄧小平接見韓益洙談話記錄.” 1962年4月30日. 外交部檔案館. 106-01380-18.

“公安部黨組關於朝鮮族越境情況的報告(조선족 주민의 불법월경상황에 관한 공안부당조직의 보고).” 1961年5月10日.

“國務院關於地圖上我國邊界線畫法的內部通知.” 1965年1月18日. 江蘇省檔案館. 3124-0124. 短期.

“國務院關於地圖上我國邊界線畫法的內部通知.” 1965年1月18日, 江蘇省檔案館. 3124-0124. 短期.

“外貿部關於涉及我國邊界線的地圖出口管理問題的通知.” 1965年1月31日. 江蘇省檔案館. 3124-0124. 短期.

□ 중국_인터뷰 및 담화기록

- “毛澤東與印共左派學習代表團談話記錄(마오쩌둥과 인도공산당 좌파학습대표단과의 담화기록).” 1967年12月13日.
- “周恩來接見朝鮮最高人民會議代表團談話記錄.” 1962年6月28日. 外交部檔案館. 106-01379-03.
- 劉少奇. “周恩來接見朴成哲談話記錄.” 1964年3月20日. 外交部檔案館. 109-03909-07.
- “毛澤東會見朝鮮政府代表團談話記錄.” 1958年11月25日.
- “毛澤東會見朝鮮黨政代表團談話記錄.” 1964年10月7日.
- “第二亞洲司司長姚廣接見朝鮮駐華大使朴世昌談話記錄(제2 아시아사 사장 야오광과 중국주재 북한대사 박세창과의 회담기록).” 1964年8月21日. 外交部檔案館. 106-01434-07.
- “필자와 왕치싱(왕페이)의 아들, 王啓星, 王飛)과의 인터뷰 기록.” 2011年2月7日.
- “周恩來接見朝鮮科學院代表團時的談話.” 『外事工作通報』. 1963年6月28日. (1963-10).

□ 영어 및 러시아어 자료

- Fravel, Taylor(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푸자노프 일기: 1957年8月16日부터 10月15일까지.” ABИPΦ(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 0102, оп. 13, д. 5, л. 193-307.

|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25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04월 03일 |

|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1 (2012)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Boundary Issu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1950-1964)

Shen Zhihua

(East China Normal Univ., China)

The dispute on delimitation of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till remains as a historic issue. In 1950's,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border issu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s a secondary issue under the premise of admitting Gando Treaty. In 1962 when China was facing with difficult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North Korea requested to open a meeting to solve border issue with the question of the title to Mt. Changbaek(Baekdusan). At that time, the government leadership had decided to yield it to the North Korea to secure political support of North Korea and maintain "the ties of Brotherhood. Therefore, the boundary treaty between the North Korea and China could be concluded smoothly and rapidly in a few month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roach and result of the boundary issue,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 and China was normal but didn't reach to the modern cross border relations.

Key words: China-North Korea Border Conference, China-North Korea Board Treaty, China-North Korea Relations, Mt. Baekdusan, Gando Treaty